

# 「대일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」

## □ 사전검사제도 개념

- 대일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사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

## □ 사전검사제도 이용에 따른 효과

- 검사에 따른 비용절감
- 통관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제품선도 유지
- 일본에서 검사시 불합격될 경우 ‘위반업체 리스트 등록’ 사전예방

## □ 사전검사제도 도입 시 검사의뢰 절차

- ① 수출업체는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수출제품에 대한 자료\*를 일본 수입업체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공
  - \* 원재료표(원재료, 첨가물등 기재된 것), 제조공정표(살균온도, 시간등)
- ②~③ 일본 수입업체는 사전상담제도를 활용하여 수입항구 검역소에 식품유형, 검사항목, 시험방법 확인 요청
- ④ 수입업체는 일본 검역소에 확인된 정보를 한국 수출업체에 확인된 자료 송부
- ⑤ 수출업체는 검체와 일본 후생성에서 확인한 자료 동봉하여 검사기관(한국식품연구소)에 검사의뢰
- ⑥~⑦의뢰받은 검사기관(한국식품연구소)은 검사 후 시험성적서를 수출업체에 발급

